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을 둘러싼 기억투쟁에 관한 연구

김희승*

이 글은 전두환 재판의 참여 관찰을 토대로 헬기 사격을 둘러싼 기억투쟁의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헬기 사격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한다. 헬기 사격은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사태' 진압 논리인 자위권 사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으로서 사격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쟁투가 전개되어 왔다. 전두환 재판은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왜곡·은폐된 헬기 사격의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는 기억투쟁의 공간이었다. 자위권 사격이라는 신군부의 공식기억은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헬기 사격에 관한 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전두환 재판은 헬기 사격의 대항기억이 사회의 공식기억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드러냈다.

I 주제어 I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기억투쟁, 기억의 정치, 전두환 재판

*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I. 문제제기

2020년 11월 30일,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전두환 1심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8년 5월 검찰의 기소 이후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8차례의 공판기일, 증인 34명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들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1980. 5. 21. 광주에 무장상태로 있었던 500MD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 2020년 11월 30일).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사법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함으로써 헬기 사격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짧게는 2017년 4월 전두환의 회고록 출간으로부터, 길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직후부터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던 사건이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비오 신부 유족은 전두환을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법적 절차는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12·12 및 5·18사건 재판으로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현행의 법률체계에서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관계자를 더 이상 법정에 세울 수가 없었다. 더구나 헬기 사격은 1995년 특검 수사에서 주요 사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았으며, 수사 결과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군인들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사실상 신군부는 헬기 사격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전

두환 본인이 작성한 회고록으로 인해 헬기 사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전두환 재판은 명예훼손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헬기 사격의 실재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사실에 부합한 주장을 한 조비오신부에 대한 전두환의 비난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두환 재판은 법률적 쟁점보다는 헬기 사격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기억투쟁의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결심 공판의 검찰 구형 이유¹⁾와 변호인 최후 변론²⁾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두환은 재판과정 내내 헬기 사격은 실재하지 않는 일이라며 부정으로 일관했다.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헬기 사격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검찰측 증인에 대해서는 기억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에 검찰은 일본 성노예, 홀로코스트 등 역사적 사건의 사회적 기억을 훼손한 국제사례를 거론하면서 부정으로 일관하는 전두환의 태도를 비판했다. 기억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 제기에는 검찰이 확보한 군 기록을 통해 반격을 시도했다.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전두환 재판은 5·18민주화운동의 왜곡되고 은폐된 기억을 들추어 내는 쟁투의 과정으로서 기억투쟁과 기억의 정치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두환 재판의 참여 관찰을 토대로 헬기 사격을 둘러싼 기억투쟁의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헬기 사격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1) 5·18북한군,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영국 공수부대의 아일랜드 대시민 총격 부인 등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적 진실인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2020년 10월 5일, 검찰의 구형 이유).

2)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완전한 허구다. 이제 이성을 회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로 거짓과 허구를 걸어내고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20년 10월 5일, 전두환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연구는 2017년 진행한 ‘계엄군의 사격행위 분석’의 후속 연구의 성격 또한 갖고 있다. 계엄군의 사격행위 분석에서 5월 21일 헬기 사격은 전남도청에 증원부대 투입을 위한 군 작전의 일환이었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2017년 연구를 진행할 당시 국방부와 육군은 헬기 사격을 부정하면서 진실규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군 작전 기록의 존안 유무조차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었다(김희송, 2017). 이러한 제약 요소에도 불구하고 1995년 특별 수사본부가 확보한 기록물 분석을 통해 계엄군의 사격은 자위권적 차원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계획된 군 작전이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의 헬기 사격이 군 작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뉴시스, 2017.5.19; 중앙일보, 2017.5.19; 광주일보, 2017.5.22; 경향신문, 2017.8.5). 계엄군의 사격행위 분석은 검찰의 전두환 수사에서 전두환을 기소하는 중요 논거로도 활용되었다. 이런 연유로 필자는 전두환 재판에서 검찰측의 전문가 감정 증인으로 참여했다.

‘계엄군의 사격행위 분석’ 논문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헬기 사격 규명을 위한 사회적 요구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으로 연결되었다. 필자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민간 조사관으로 참여하여 군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군 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자로서는 드물게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하면서 다양한 참여 관찰을 경험했다. 이러한 참여 관찰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2017년 연구 이후 변화된 정치적 기회구조의 환경에서 새롭게 발굴한 군 기록물 분석과 전두환 재판에서의 기억투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는 헬기 사격의 실체적 진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II.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과 기억투쟁

1. 헬기 사격 기억투쟁의 배경

4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헬기 사격이 첨예한 쟁점으로 격화되는 것은 헬기 사격이 갖는 정치적 의미 때문이다. 전두환 재판에서 검찰과 전두환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견을 드러냈지만 헬기 사격의 의미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양측은 헬기 사격은 야만적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국군이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전개할 수 없는 작전이라고 간주했다. 전두환뿐만 아니라 전두환측 증인으로 출석한 헬기 조종사들과 신군부 관계자들 또한 헬기 사격은 야만적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전두환 재판에서 유일하게 합치된 의견이 헬기 사격의 의미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헬기 사격을 둘러싼 기억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헬기 사격은 전두환도 인정하고 있듯이 야만적 행위로서 신군부의 진압 논리인 자위권 사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1980년 당시 신군부는 광주에서의 사태는 불순분자들의 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엄군의 사격은 폭도들에 맞선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자위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자위권 행사는 적과의 교전시 이루어지는 발포 명령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전두환, 2017: 422). 자위권에 의한 사격은 상황이 급박해져서 자위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지휘관이 실탄을 분배해주면 현장 사정에 따라 자기 방어를 위해 발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두환의 주장에 따르면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를 비롯하여 계

엄군의 사격행위는 발포 명령이 아닌 자위권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논리는 전두환 정권시기 ‘광주사태’의 공식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에 헬기 사격은 자위권 사격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전두환 신군부가 주장하는 ‘광주사태’의 공식기억을 부정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의 헬기 사격을 둘러싼 치열한 기억투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국가는 자신들의 폭력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식기억(official memory)을 정의하고 확산시킨다. 그리고 공식기억에 대응하는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을 억압하고 대중들과 분리시키고자 한다(이성우, 2011).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을 둘러싼 쟁투 즉 기억투쟁이 전개된다. 기억투쟁은 국가권력에 의해 공인된 공식적 역사나 담론에 대해 도전하는 방식, 즉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고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정근식, 2013: 353). 헬기 사격을 둘러싼 기억투쟁 또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1989년 2월 조비오 신부에 의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조비오 신부는 광주MBC가 1989년 2월 3일 방송한 5·18특집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눈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89년 2월 23일 국회 광주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기관총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의해 금기시되던 5월 광주의 진실이 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면서 헬기 사격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했다. 신군부의 자위권 사격이라는 공식기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헬기 사격이라는 새로운 사회기억이 등장하면서 치열한 기억의 쟁투가 시작되었다.

조비오 신부의 주장에 대해 육군 항공여단은 광주에 파견된 제1항공

여단³⁾ 헬기 조종사 17명의 연명으로 1989년 2월 24일 서울지방 검찰청에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군과 헬기 조종사들의 고소장 제출에 따른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⁴⁾ 조종사들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으로 군의 주장과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고소장에 첨부된 헬기 조종사들의 ‘진실규명 요구서’에 따르면 “한 성직자의 막연한 기억과 진실처럼 위장된 허위사실을 아무런 확인없이 방영한 보도기관의 편협한 보도로 인하여, 당시 부여된 임무를 양심적이고도 인도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살인자와 위선자로 매도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서울중앙지검, 1996: 29291). 조종사들은 “조비오 신부가 주장하는 소위 ‘헬기 사격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제시하여 그 당시 헬기에 의한 단 한발의 사격도 없었다는 것이 진실임을 명명백백히 밝힘으로써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는 헬기 사격설은 자기 착각 내지 오인에서 기인한 허위 증언임을 증명하고자 한다”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는 500MD 헬기의 7.62밀리 6열 기관총은 분당 2,000발 내지 4,000발의 초고속으로 다량의 탄환이 비오듯 쏟아지므로 발사 당시 대낮에도 불꽃을 볼 수 있고, 엄청난 살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와 목격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목격자가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5명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했다.

따라서 헬기 사격 여부는 “피탄지역에 대한 탄환 흔적 조사, 부상자에 대한 탄각도 조사 및 사망자에 대한 시체부검 결과 등을 검토해본다

3) 제1항공여단은 500MD, 코브라 헬기등 무장 헬기로 편제된 31항공단과 UH-1H를 운영한 61항공단으로 구성되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광주에 파견된 제1항공여단 출동 병력 및 장비 현황은 김희승, 「5·18민주화운동의 재구성:계엄군의 사격행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2호, 2017, 5-58쪽 참조.

4) 2017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989년 서울지방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 사실의 처리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았으나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면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서울 중앙지검, 1996: 29283). 헬기 조종사들은 조비오 신부의 ‘막연한 기억과 진실처럼 위장된 허위’에 맞서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조사’를 통해 헬기 사격의 여부를 파악하자고 역설했다.

2. 헬기 사격 기억투쟁의 쟁점

1) ‘사실’과 ‘진실’의 쟁점

1989년 조비오 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군과 헬기 조종사들의 고소는 국가가 자신의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억을 어떻게 억압하고, 대중들과 분리시키려 하는 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사태’의 공식기억에 맞선 헬기 사격의 사회적 기억을 허위로 규정했다. 헬기 사격의 진실 규명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정부 차원의 조사와 아울러 문제를 제기한 조비오 신부는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조비오 신부에게 목격 사실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일면 합리적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실현 불가능한 요구였다. 왜냐하면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사실은 현실에서 재현할 수 없는 기억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목격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허위라는 논리는 기억을 통제하는 권력의 작동방식이었다. 특히 전두환 신군부가 군 기록과 헬기 조종사들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기억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헬기 사격 기억의 또 다른 주체인 헬기 조종사들은 단 한발의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헬기의 특성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기억의 신뢰성을 문제삼았다. 1989년 고소장에 적시된 헬기 조종사들의 주장과 논리는 2020년

전두환 재판에서 그대로 반복되었다. 전두환은 재판과정에서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한 헬기 사격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1980년 당시 군은 헬기 사격은 고사하고 헬기 작전을 계획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군 기록과 군 관계자의 증언에서 확인된다고 역설했다.

헬기 사격은 조종사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영역이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근거로 주장되는 내용을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의 조사를 통해 군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전문성으로 은폐되었던 사실의 진실이 확인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헬기 사격의 특징에 관한 부분이다. 1989년 고소장에서 헬기 조종사들은 500MD 헬기는 분당 2~4천 발의 실탄이 비오듯 쏟아지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재판에서도 광주에 출동한 헬기 조종사들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전두환 변호인은 연속 사격을 하는 500MD 헬기 영상을 재판정에서 상영했다.

그러나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 조사에서 500MD 헬기는 분당 수천발을 사격하는 자동 연속 사격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헬기 사격은 짧게 끊어서 사격하는 이른바 ‘점사(點射)사격’을 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⁵⁾. 1항공여단 헬기 조종사들은 500MD 헬기가 사격을 하면 수천발이 발사되기 때문에 누구나 목격할 수 있고 주변은 초토화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수십발 적게는 6발까지 발사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검찰측이 제시한 500MD 헬

5) 2017년 9월 25일 항공작전사령부 하남기지에서 실시한 ‘헬기 사격 방법 현지조사’에서 필자가 인터뷰한 항공작전사령부 헬기 조종사들은 500MD 헬기에 탑재된 기관총은 1980년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양으로서, 6열 기관총의 특성상 사격에 따른 전기신호가 주어지면 6열 머신건이 회전하면서 사격이 이뤄지기 때문에 6발 단위로 사격이 이루어진다고 진술했다. 조종사의 훈련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숙달된 조종사는 6발에서 12발 단위로 끊어서 사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2018).

기 점사 사격의 특징을 그대로 인용했다. 전문성을 무기로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은폐의 카르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전두환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한 1항공여단 지휘관과 헬기 조종사들은 전두환의 주장처럼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80년 당시 헬기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휘부가 광주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1980년 광주에 파견된 헬기부대의 최고 책임자인 1항공여단장 송진원은 2019년 11월 11일 전두환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5·18기간에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500MD 헬기부대의 책임자인 31항공단장 방영제대령을 광주에 파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항공여단장 최고 책임자인 본인은 물론 항공여단의 지휘관들을 광주에 파견하여 작전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다는 논지였다.

그러나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서고에서 발견한 항공감실의 1980년도 ‘80항공 병과사’에는 송진원 단장의 광주 출장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80항공 병과사의 충청작전 내용에는 “5월 26일 1항공여단장과 6명 광주 UH-1(13:10-14:45),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 귀대(17:45) UH-1”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육군 항공감실, 1981).

80항공 병과사와는 별도로 1980년 5월 26일 보안사의 첩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송진원 단장의 광주 출장 사실은 물론 동승 인원의 명단까지 확인할 수 있다. 보안사 첩보 보고에는 5월 26일 광주행 헬기에 탑승한 인원은 ‘항공여단장외에 항공감실 안전과장, 작전처장(1항공), 간호장교 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5월 26일 1항공여단장과 1항공여단 작전처장, 1항공여단의 상급부대인 항공감실의 안전과장 등 항공부대 관계자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한 것은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과 연관된 출동이었다. 1항공여단 관계자들은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이 종결된 이후

에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함께 서울로 복귀했다.

2019년 11월 11일 법정 증언에서 송진원 1항공여단장은 500MD 헬기부대의 책임자인 방영제 대령을 광주에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방영제 대령은 특검 조사에서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파견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검, 1996: 29339). 5·18기간에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송진원 1항공여단장의 법정 증언과 달리 군 기록에는 송진원 단장의 인솔하에 방영제 대령을 비롯한 항공여단 핵심 지휘부의 광주 출장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전두환측 증인으로 출석한 송진원 1항공여단장은 자신의 상급부대인 항공감실에서 1981년 발간한 ‘80항공 병과사’에 수록된 내용조차도 위증으로 사실을 호도했다. 1항공여단장과 헬기조종사들은 전두환 재판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부인은 군 기록으로 보증받아 왔다.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특검 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공개된 군 기록은 전두환과 헬기 조종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

이처럼 신군부의 주장을 보증하는 군 기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전두환 재판과정에서 송진원 항공여단장은 위증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군 기록물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군 기록이 확인되었다. 특히 보안사령부가 비밀리에 관리해 왔던 5·18존안 기록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⁶⁾ 신군부의 주장은 군 기록에 의해 부정되기 시작했다.

전두환과 1항공여단 관계자들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헬기 사격관련 군 작전 기록은 보안사령부 5·18존안 자료에서 확인된다.

6) 보안사령부의 5·18관련 군 기록물 관리와 폐기에 관한 내용은 김희송, 「군 기록물 분석을 통한 5·18민주화운동연구: 국보위 ‘광주사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1호, 2020, 5-52쪽 참조.

보안사령부가 5·18존안 자료로 관리한 군 기록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작전 지침과 아울러 헬기 사격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보안사령부가 관리한 헬기작전 문서들은 보안사령부에 문서를 제공한 군 관계자들의 신원과 자료 제공 날짜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⁷⁾. 육본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소장이 보안사령부에 제공한 ‘지침 헬기 작전 계획 실시하라’ 문서에는 “시위사격(示威射擊)은 20밀리 발칸, 실사격(實射擊)은 7.62미리가 적합”하다면서 헬기 사격의 구체적 수단까지 특정하고 있다. 또 다른 문서인 ‘경고문’에는 “방송종료 즉시 발칸 위협사격 실시로 양민경고 분리 및 위압감과 공포감 효과 달성”이라는 작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헬기사용에 관하여’라는 서신은 1980년 5월 22일 최갑석 항공감(소장)이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에게 보내는 친서로서 육본 항공감실에서 헬기작전을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본 작전처장 이종구 준장이 제공한 ‘작전지원 지침, 헬기 지원’에는 헬기에 의한 작전을 “공중방송, 지휘정찰, 엄호, 공격, 사상자 후송” 등으로 예시하면서 지상공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 확보 보안목표 감시 비행’에는 “형무소, 도청, 전일, 화약고 등 지정 목표”라는 메모가 추가되어 있다. 도청과 전일빌딩이 주요 보안 목표 감시비행 장소였다는 사실에서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헬기작전에 관한 문서를 보안사령부에 제출한 군 관계자가 1980년 당시 군 작전을 책임졌던 육군본부 작전처의 책임자들과라는 사실은 헬기작전이 군의 공식적인 작전이라는 반증일뿐 아니라 헬기작전에 관한 문서 내용처럼 군 작전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이종구 작전처장은 보안사령부에 헬기작전 문서 이

7) 보안사령부가 1981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5·18관련 군 기록물을 수집한 것은 당시 보안사령부 주관으로 집필 중이었던 ‘5공전사’의 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외에도 다양한 군 작전 문서를 제공했는데, 이들이 제출한 군 작전지침은 광주에서 실제로 실시한 작전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당시 육군본부의 군사 작전을 책임졌던 김재명 소장과 이종구 준장이 보안사령부에 제공한 헬기작전 문서에 따르면 헬기 사격을 동반한 헬기작전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980년 당시 군 작전을 총괄했던 육군본부 작전처의 최고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보안사령부에 제공한 헬기작전 문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전개한 항공여단 기록과 전투상보 등 군 기록에는 헬기작전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이전까지 공개된 군의 공식기록에서 헬기작전 내용이 없었던 이유는 511연구위원회⁸⁾의 광주청문회 ‘증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511연구위원회 내부분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군 기록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신군부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군 기록을 위·변조했다. 511연구위원회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전교사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 교훈집’의 경우 “항공임무: 무력시위 및 의명 화력지원의 문구는 항공지원 임무가 화력지원이 주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명 화력지원’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계엄사 광주사태관련 증언대비계획 I, 1989: 145).

국방부의 국회 광주청문회 대응 조직인 511연구위원회가 헬기 사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군의 공식 기록에서 헬기 사격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511연구위원회의 내부 검토 의견은 군 기록에서 헬기 사격의 내용이 어떻게

8) 511연구위원회 등 5·18왜곡 조직의 활동 사실은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처음 확인하면서 그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다. 5·18왜곡 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2018, 참조.

사라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511연구위원회는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교훈집의 경우 삭제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부검토 결과 존재하지 않는 자료 이른바 비공식 문서로 분류해서 청문회에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계엄사 광주사태관련 증언대비계획 I, 1989: 146). 이후 군은 1988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교훈집’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전체 기록인 것처럼 제출했다.

국방부는 1988년 국회 청문회 과정에 전교사 교훈집의 원본이 아닌 일부 발췌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것마저도 위·변조한 내용으로 제출했다.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전교사 광주사태 교훈집 원본에는 1항공여단의 출동 병력 및 장비의 현황을 ‘조종사, 승무원, 통계요원’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기록했다. 반면에 1988년 광주 청문회에 제출한 현황 자료에서는 출동병력의 전체 인원만 수록하는 방식으로 위·변조한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국회는 국방부가 위·변조하여 제출한 군 기록을 원본 자료로 알고 있었다. 국방부가 위·변조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1988년 국회청문회 당시 위·변조한 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전교사가 항공작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왜냐하면 전교사 광주사태 교훈집에 수록된 항공작전 교훈에서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문구가 헬기 사격의 근거로 당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표현은 항공작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교사가 항공교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전교사는 항공작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처럼 비취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새로 발견한 1980년도 항공 병과사의 항공작전 내용 및 평가 사항을 살펴보면 전교사 교훈집에 수록된 항공작전 내용과 대

부분 일치했다. 따라서 전교사 교훈집에 수록된 헬기의 높은 탄약 소모율은 항공교본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 대한 평가 결과가 수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듯 511연구위원회의 헬기 사격에 대한 군 기록 삭제 지시와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교훈집의 위·변조 제출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군의 공식 기록에서 헬기작전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전두환 재판에서 전두환과 헬기 조종사들이 주장하듯이 헬기 사격을 포함한 헬기작전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군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광주사태’의 공식기억과 배치되는 헬기 사격의 기록을 신군부가 삭제하고, 위·변조했기 때문에 현재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 ‘기억’과 ‘기록’의 신뢰성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제기한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사이에 500MD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두환은 재판에서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고 주장한 그 시각에는 500MD 무장헬기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헬기 사격은 일어날 수 없으며, 조비오 신부의 목격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전두환은 5월 21일 무장헬기가 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군 기록을 통해 입증되기 때문에 조비오 신부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헬기 조종사들도 전두환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1989년 검찰 고발과 1995년 특검 조사에서 1항공여단 관계자와 헬기 조종사들은 5월 15일 경 지휘용 내지 정찰 용도로 500MD 헬기 1대를 광주에 파견했고, 사격이 가능한 무장헬기는 5월 21일 저녁 이후에 출동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5월 21일 오전에 광주로 출동한 500MD 헬기는 가스 살포기를

부착했기 때문에 사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당시 군이 제공한 전투상보와 상황일지 등에는 조종사들의 주장처럼 M5가스 살포기를 장착한 500MD 헬기만 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공개된 군 기록은 전두환의 주장처럼 헬기 사격이 불가능한 여건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공식기록과는 달리 보안사령부가 비밀리에 보관한 5·18 존안 자료에는 5월 21일 이전에 500MD 무장헬기가 파견되었다는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1980년 5월 16일 작성된 보안사령부 ‘충정업무 대비 현황’ 문서에는 각 지역별로 지원한 병력과 무장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광주에 주둔한 31사단에는 “31사 500MD 1대 지원 받음(계 2대)”라고 명기되어 있다. 보안사령부가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앞두고 작성한 군 기록에 따르면 전두환의 주장과는 달리 5월 16일 이미 광주 지역에는 500MD헬기 2대가 파견되어 있었다.

또한 ‘보안사령부 일일 속보철’에는 5월 21일 오전 10시 2대의 500MD 헬기가 광주로 출동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보안사령부가 1980년 당시 광주의 상황과 군의 대응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5월 21일 보안사령부 일일 속보철에 따르면 “2군 구두 지시에 의거 506항공대 소속 MD 500헬기 2대가 광주소요 사태 진압차 출동”으로 명기되어 있다.

9)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인용한 1항공여단 관계자들은 1989년 조비오 신부에 대한 고발장에서 헬기 사격이 가능한 무장헬기가 당시에 기동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1항공여단 관계자들은 “헬기 등 항공전력을 투입하여 위력시위, 지휘 및 정찰비행, 공중방송 및 전단살포 등과 아울러 2817명의 작전 병력 공수, 93명의 환자 후송 및 187톤의 보급품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문제의 5월 21일 오전 중에는 비무장 500MD가 M5최루가스 살포를 위하여 광주시내 상공을 비행한 바 있고, 오후 2시경에는 수송용 헬기인 UH-1H 2대가 도청 상공을 정찰 및 선무방송 목적으로 비행한 사실은 있으나 문제의 무장헬기는 2시경 비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UH-1H헬기가 시위대의 대공사격을 받고 기체의 손상을 입은 채로 회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 1996: 29274).

5월 21일 오전 10시 500MD 헬기의 광주 출동 사실은 보안사령부의 또 다른 문서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보안사령부는 ‘광주사태’종결 이후 광주지역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도 5월 21일 무장헬기 출동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1988년 국회 청문회에 제출한 군의 공식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반면에 511연구위원회의 내부 검토 문서에는 “기간중 무장 항공기 지원은 사실임”이라고 무장헬기의 지원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511연구위원회는 “당시 31사단에는 80.5.19부터 광주사태 종료시까지 500MD(무장헬기) 3대 사단 사령부에 상주”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기록했다(계엄사 31사단 관계관 간담회, 1988). 511연구위원회는 무장헬기의 파견 기간과 무장상태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5월 21일 무장헬기의 출동 사실이 군 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과 헬기 조종사들은 재판 내내 그 사실을 부인했다. 전두환은 부인에 그치지 않고 재판 막바지에는 군 기록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전두환은 검찰이 제시한 군의 헬기 작전 기록은 1980년 당시 작성한 군의 기록이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을 재판 막바지에 제기했다.

전두환은 재판 초기에는 기억이 아닌 기록과 같은 실증자료를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군 기록이 대거 제출되자 그 기록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2020년 9월 21일 전두환측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1980년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 이종구 준장¹⁰⁾은 검찰측이 제시한 헬기작전 관련 문서는 육군본부의 공식 기록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10) 이종구는 육사 14기로 하나회의 핵심 인사로 알려졌다. 보안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육군본부는 1980년 당시 그런 양식의 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논지였다.

검찰이 헬기 작전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 ‘지침 HEL기 작전 계획 실시하라’, ‘작전지원 지침, 헬기 지원’등의 문서는 본적도 없을뿐더러 1980년 당시 문서 양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침 HEL기 작전 계획 실시하라’ 문서의 제출자는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부장이었다. 1980년 당시 육군본부 직제상 이종구 작전처장은 김재명 작전부장의 직속 부하였다. 전두환은 이종구 작전처장의 증언을 통해 김재명 작전부장이 제출한 문서를 출처가 불명한 신뢰성 없는 문서로 몰아가려 했다. 특히 김재명 작전부장이 노환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1980년 당시의 문서가 아니라는 이종구 작전처장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전두환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이종구 작전처장을 내세운 이유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군이 독점하고 있던 군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전두환의 주장은 바로 반박되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보안사령부가 존안하고 있는 헬기작전 문서는 군 기록을 제출한 군인의 신원과 제출 날짜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종구 작전처장이 증인으로 참석해서 본 적도 없고, 당시의 문서 양식도 아니라고 증언한 ‘작전지원 지침, 헬기 지원’문서는 제출자가 이종구 준장으로 명기되어 있다.

전두환은 검찰측이 확보한 헬기작전 문서를 김재명 작전부장이 1995년 특검에 제출한 문서로 착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명 작전부장이 1995년 특검에 제출한 문서와 보안사가 존안하고 있는 문서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였다. 그러나 보안사가 존안한 문서는 특검에 제출한 문서와는 달리 제출한 사람과 날짜가 함께 명기되어 있다. 또한 제출한 순서대로 연번이 매겨있어서 문서 검증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필자가 감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 제출한 헬기작전 문서는 보안사령부에서 존안하고 있던 군 기록의 일부였다. 따라서 이종구 작전처장의 증언처럼 헬기작전 문서를 출처 불명의 기록으로 몰아갈 수가 없었다.

이렇듯 전두환 재판은 신군부의 공식기억을 보증하는 수단이었던 군 기록을 시민들이 재전유하여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데 활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를 활용하여 군 기록에 대한 군부의 독점을 무력화시키면서 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활동을 시작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기존의 5·18진상규명 활동과는 달리 조사의 자율성을 확보한 채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보안사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군 기록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편찬연구소가 지하 서고에서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던 5·18관련 군 기록을 대거 발굴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1996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5·18관련 군 기록을 수집·보관해 왔다. 그러나 군사편찬연구소는 이러한 사실을 20년 동안 비밀에 부치고 군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확보한 군 기록에는 1988년 국회청문회 대응 조직의 내부회의 자료 등 지금까지 존재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던 5·18왜곡조직의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확보한 군 기록을 전두환 재판과정에 헬기 사격의 입증자료로 제출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두환 재판은 그동안 왜곡의 수단이었던 군 기록을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민의 기록으로 재전유하여 진실규명의 기제로 활용한 기억투쟁의 공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의 재구성

1. 5월 21일 군 작전과 헬기 사격

5월 21일 헬기 사격의 실제적 진실은 광주에서 전개된 군 작전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파악할 수 있다. 5월 21일 군 작전은 개별 부대나 특정 장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물망처럼 연계된 하나의 작전 개념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헬기 사격을 포함한 5월 21일의 군 사격은 도청 증원부대로 긴급 파병된 20사단의 투입작전과 이동 경로를 연계했을 때 완전한 재구성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5월 21일 0시 광주역 앞 집단발포, 5월 21일 13시 경 도청 앞 집단발포, 5월 21일 13시부터 17시까지의 헬기 사격 등 5월 21일의 사격은 모두 20사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김희송, 2017).

전두환 신군부는 5월 18일 7공수 여단 688명(장교84/사병604)의 투입을 시작으로 5월 19일 11공수여단 1,200명(장교162/사병1038), 5월 20일 3공수여단 1,392명(장교255/사병1137)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확산되자 5월 20일 오후 20사단 4,766명(장교284/사병4,482)의 투입을 결정했다. 20사단의 투입은 기존에 광주에 파견된 특전사 병력 3,280명과 지역 향토 사단 31사단 병력 1,580명(장교150/사병1,430)을 합한 병력 규모로서, 사단 전체 병력의 대거 투입으로 일거에 시위를 제압하기 위한 신군부 수뇌부의 결정이었다.

육본의 작전명령에 따라 20사단 61연대 1,495명(장교82/사병1,413)이 5월 20일 22시 30분 기차를 이용하여 먼저 출발했다. 이어서 사단본부와 62연대 1,669명(장교114/사병1,555)은 5월 21일 2시 다음 기차편으로 출발했다. 기차를 이용한 병력 수송의 최종 도착지는 기존의 특전사 투입경로와 같은 광주역이었다. 맨 마지막에 출발한 60연대는 사태의 급박성을 반영하여 5월 21일 오후 수송기를 이용하여 투입했다.

20사단의 병력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광주 시위는 군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격화되고 있었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 5월 21일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계엄사령부는 오전 8시 전교사 관할지역인 광주전남북일원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했다. 진돗개 하나는 군의 작전 준비태세에서 최고 수준의 대응으로 전투태세를 의미한다.

1980년 당시 군 작전지침인 진돗개 하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유·무선통신 24시간 개방 운영, 실탄 지급, 책임지역 작전 실시’ 등을 즉각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돗개 둘의 경우 출동태세로 ‘탄약 기본 휴대량 지급 준비 및 추가 보급 계획 검토’ 수준인 반면에 진돗개 하나로 대응태세가 격상되면 ‘탄약 기본 휴대량 지급 및 추가 보급 조치’를 취하는 등 전투작전에 돌입해야 한다.

기갑학교 부대사¹¹⁾에는 진돗개 하나 발령에 따른 기갑학교의 조치를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됨에 따라 기갑학교는 24시간 무전을 개방하고, 실탄을 부대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한다. 탄약분배는 M16은 개인당 90발, 권총은 개인당 14발, 30LMG 기관총은 화기당 250발씩을 지급했다. 기갑학교는 8시 15분 진돗개 하나 비상조치를 접수하고, 8시 35분 탄약수송 차량이 출발하여 11시에 탄약 분배를 완료했다. 부대사에 수록된 기갑학교의 조치는 진돗개 하나의 대응 매뉴얼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갑학교 부대사에 기록된 진돗개 하나 대응조치에서 확인되듯이 기갑학교를 비롯한 전교사 관할 지역인 광주전남북지역의 모든 부대는 기갑학교와 비슷한 시각에 실탄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교사에

11) 기갑학교의 1980년도 부대사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기갑학교에서 처음 발견했다. 기갑학교 부대사는 기갑학교의 서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부대사의 발간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기갑학교 부대사는 1981년 발간 당시 형태로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발견될 수 있었다

배속된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3공수여단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기자들이 오전 10시경 도청에서 목격한 공수부대원들의 실탄분배는 일부 대원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진돗개 하나 발령에 따른 대응 매뉴얼의 정상적인 조치였다. 5월 21일 13시경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기 5시간 전에, 계엄사령부의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 군에는 이미 실탄이 지급되고 전투태세가 완비되었다.

5월 21일 오전 8시 군의 전투태세인 진돗개 하나 발령의 급박한 상황은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 광주로 진입하던 20사단 지휘부 차량 14대가 시위대에 피탈되었다. 20사단 지휘부 차량의 피탈뿐만 아니라 M60 기관총 3정, 무전기, 군 암호문 등을 함께 분실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더구나 5월 21일 새벽 상무대에 도착한 20사단 61연대는 아침 일찍 차량 40대를 이용하여 도청으로 이동하던 중 7시 30분 공단 입구에서 시위대와의 대치 끝에 도청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상무대로 되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5월 21일 새벽 4시 30분 육군본부에서는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재로 계엄사령부의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 동정일지에 따르면 새벽부터 개최된 회의에는 계엄사령부 핵심 수뇌부가 모두 참여했다. 계엄사령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새벽부터 열리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군 수뇌부가 새벽에 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광주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엄사령관 주재의 새벽 회의의 개최 이유는 5월 20일 자정에서 5월 21일 2시 사이 3공수여단이 광주역에서 자행한 집단발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5월 21일 3공수여단의 광주역에서의 집단발포는 20사단의 광주역 도착과 관계된다. 증원부대인 20사단 61연대의 최초 도착지는 광주역

이었다. 20사단의 도착지를 안전하게 사수할 것을 명령받은 3공수여단은 시위대에 사격을 가해서 광주역을 사수했다. 3공수여단이 집단발포를 통해 광주역을 사수했지만 광주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면서 61연대는 송정리역에 도착하여 상무대로 이동했다(김희송, 2017). 이렇게 이동한 20사단 61연대가 5월 21일 7시 30분 도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지휘부 차량이 탈취당하는 등의 사건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새벽부터 회의를 진행하던 계엄사령부는 결국 진돗개 하나 발령을 결정했다.

진돗개 하나 발령 이후 계엄사령관 주재 새벽회의에 참여한 육군본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군 핵심 인사들의 광주행이 이어진다. 5월 21일 오전에 광주를 방문한 군 수뇌부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조홍 헌병감,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으로 확인된다. 보안사 자료에 따르면 5월 21일 오전 8시 특전사령관 외 2명이, 오전 10시에는 헌병감외 5명이 UH-1H를 이용하여 광주를 방문했다. 2군 사령관도 오전 8시 30분 헬기를 이용하여 광주로 출발했다. 이들은 도청 앞 집단발포와 헬기 사격이 발발했을 때 광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5월 21일 오전 8시 진돗개 하나 발령 이후 군 수뇌부는 헬기를 이용하여 20사단 병력을 도청에 투입하는 이른바 ‘공중기동 작전’을 준비했다. 시위대의 도로 봉쇄로 20사단의 도청 진입이 무산된 가운데 UH-1H 헬기를 광주에 급파하여 육로가 아닌 공중으로 병력 수송을 도모한다. 1항공여단이 5월 21일 오전 11시 UH-1H 10대를 전교사에 급파한 것은 20사단의 공중기동작전을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듯 5월 21일 도청을 중심으로 군이 전개한 핵심 작전은 20사단 병력을 도청에 투입하는 작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의 군 작전을 총괄했던 김재명 작전부장의 1995년 특검 진술, 20사단 관계자들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육로를 통한 투입이 좌절

된 이후 헬기를 이용하여 20사단 병력을 도청으로 투입하는 작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청 앞 집단발포와 헬기 사격을 자행했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는 광주에 급파된 UH-1H 헬기 10대가 도착하여 비상 급유를 마치고 도청 투입작전을 준비하고 있던 시각에 발생했다. 계엄군의 도청앞 집단발포는 자위권 차원의 사격이 아니라 군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작전 목적의 사격이었다.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는 20사단 공중기동작전을 위한 헬기장 사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95년 특검 수사에서 5월 21일 도청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11공수 61대대장 안부웅 중령은 집단발포의 와중에 헬기장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특전사 지휘부의 무전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검, 1996: 105615). 특히 7공수여단과 11공수 현장 지휘관들은 도청 앞 분수대 옆 헬기장을 사수해야 본인들의 철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헬기에 의한 공중기동작전으로 도청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20사단 61연대장 김동진 대령은 1995년 특검 조사에서 시간은 특정할 수 없지만 도청 정찰을 나간 헬기가 피격을 당해 도청 투입작전을 취소했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검, 1996: 31004). 그러나 군 기록에는 집단발포 이후에도 헬기를 이용한 공중기동작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11공수 여단의 5월 21일 상황일지에 따르면 “15:00 경 20사단과 교체할 예정이니 헬기장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도청 앞 헬기장을 중심으로 근처의 빌딩옥상에 병력을 분산 경계를 취하면서 교대병력이 올 것을 대기”라고 기록하고 있다.

11공수 상황일지에 기록된 15시는 조비오 신부와 아놀드 피터슨 목사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시각과 일치한다. 특히 이 시각 육군본부 수뇌부는 소요진압을 위해 전차투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보안사의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에는 “15:00 육본에서 광주 소요 사태 진압

을 위해 전차 투입을 검토”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보안사 일일 속보철(21-30보)’에는 전차투입에 관한 구체적 검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5월 21일 15시 30분 701보안부대가 보고한 ‘광주 소요 진압 전차 투입 검토 동정(21-30보)’에는 “육군 참모 차장은 광주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 전차 투입을 관계 참모와 검토 중임. 광주지역은 기갑교에 2개 대대 보유”라고 세부적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헬기 사격이 목격된 시각에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 중장이 전차를 투입하여 시위진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안사의 첩보 보고내용은 1980년 당시 신군부 수뇌부의 상황인식과 대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5년 특검 조사에서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은 전차 투입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에 기갑학교 부대장 이구호 소장은 황영시 중장으로부터 탱크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검, 1996: 104388). 또한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소장도 황영시 참모차장으로부터 전차와 헬기를 동원한 시위진압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검, 1996: 106563).

1995년 특검 조사에서 기갑학교 부대장 이구호 소장은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과의 대질 신문에서 5월 21일 16시경 황영시 중장이 전화를 걸어서 “나 참모차장인데 광주사태의 폭도들을 진압하고 도청을 점령하는데 전차를 동원하여야겠다”라고 지시를 했지만, 전차 동원을 거절하자 황영시 중장이 “이 자식 전차포를 쏘면서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검, 1996: 104389).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소장은 황영시 참모차장과의 대질 신문에서 황영시 중장 지시의 근거로서 1980년 당시 전화 통화를 기록한 메모지를 제출했다. 이에 황영시 참모차장은 “기억은 나지 않으나 메모에 기록되어 있으니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인정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지시 사실을 마지

못해 인정했다(서울중앙지검, 1996: 106567).

5월 21일 16시 신군부 수뇌부가 전차를 투입한 시위진압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헬기 사격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육군본부로부터 전차 투입을 지시받은 전교사는 광주전남 지역에 주둔한 부대인 반면에 헬기 사격을 지시받은 1항공여단은 육군본부의 직할 부대였다. 전교사 소속 지휘관들은 전차투입 지시를 거부했지만, 육군본부의 직할 부대인 1항공여단은 전교사 소속 지휘관과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었다. 1980년도 항공병과사에는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하사받은 '5월 27일 충청작전에 대한 격려문'이 수록되어 있다. 반면에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과 이구호 기갑학교 부대장 등 전교사 지휘관들은 1980년 직후 신군부에 의해 강제 예편을 당했다.

군 기록에 대한 분석과 군 작전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살펴보면 5월 21일 계엄군의 사격은 자위권적 차원의 사격이 아니라 군 작전 목적의 사격이었음이 확인된다. 도청 앞 집단발포와 헬기 사격은 진돗개 하나 발령 및 20사단 도청투입을 위한 공중기동작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육군본부의 진돗개 하나 발령 이후 군 수뇌부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하고, 이들이 광주에 머무르는 동안 도청 앞 집단발포와 헬기 사격이 발생했다. 5월 21일의 사격은 현장 지휘관의 자위권적 판단이 아니라 군 수뇌부의 지휘였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5월 21일 사격의 책임은 군 수뇌부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군 기록으로도 확인되는 5월 21일 광주방문 사실을 지금까지 부정하고 있다.

2. 기록으로 살펴 본 헬기 사격 피해

전두환과 헬기 조종사들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근거로서 헬기 사격에 의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한다. 헬기 조종사들은 '부상자에 대한 탄각도 조사 및 사망자에 대한 시체 부검 결

과'를 통해 헬기 사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은 계엄군에 의한 사망자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얼마 되지 않으며, 헬기 사격에 의한 사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국방부가 1985년 7월 작성한 '광주사태의 실상'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 128명 중 군이 보유한 M16에 의한 총상 사망자는 29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은 사망자의 숫자가 매번 바뀌지만 M16이외의 총기에 의한 사망자는 계엄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전두환의 언급처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는 발표 시점과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980년 당시 희생자 검시를 주관한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시 현황표'에 따르면 총상 사망은 카빈 28명, 엠16 98명, 기타 7명 등 총 133명으로 분류했다. 1982년 육군본부 발간한 계엄사에는 '광주사태'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M1과 카빈 117명, 타박상 18명, 수류탄 파편상 12명, 자상 11명, 화상 4명으로 기록했다.

육군본부 계엄사에 따르면 "수류탄 파편상에 의한 사망자 12명은 난동자들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수류탄 오발사고에 기인된 것이었고, 계엄군은 수류탄을 지참하거나 사용한 일이 전혀 없었다"면서 계엄군과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계엄사의 기록과 달리 1980년 당시 수류탄 오발 사고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수류탄 파편상으로 분류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수류탄 폭발 사고처럼 신체의 훼손이 심각한 사망자가 12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85년 국방부가 국회 답변 자료로 작성한 '광주사태의 실상'은 전두환의 언급처럼 사망 원인을 M16 29명, 카빈 37명, 기타 65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공식보고서와 달리 국방부가 국

회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부 보고서’에는 사망자 현황을 “M16 29명, LMG기관총 47명, 칼빈 37명, M1 1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1985년 작성된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LMG기관총에 의한 사망자 47명이다. 지금까지 군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5년 국방부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는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를 47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총기의 구경이 LMG기관총, 칼빈, M1 모두 7.62mm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총기를 구분하여 사인을 분류했다.

LMG기관총의 구경은 500MD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의 구경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LMG기관총에 의한 사망자 47명은 500MD헬기의 M134 미니건 또는 UH-1H헬기의 M60기관총에 의한 사망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계엄군이 운영한 APC장갑차의 기관총 사격에 의한 사망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 중요한 사실은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군의 사망자 현황 통계 자료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 통계는 1985년 국방부 내부 보고서 이외에도 1988년 국방부가 국회 광주청문회 대응조직으로 결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청문회 준비검토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511연구위원회는 ‘인적 피해 상황 자료’에서 “M16 및 기관총에 의한 희생자가 76명, 칼빈이 31명, 기타 수류탄 파편, 엽총, M1 등에 의한 사망자가 18명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가 작성한 군 내부자료에서 기관총 사망자와 수류탄 파편상 사망자의 현황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는 것은 단순 오기가 아니라 사망자가 실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군부는 대외적으로는 기관총에 의한 사망을 부인해왔다. 1980년 검시 업무를 담당한 검찰의 검시 조서에서도 기관총이나 수류탄에 의한 사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확인 가능한 검찰의 검시조서에서 M16총상 사망으로 분류된 희생자들의 일부는 기관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월 21일 16시경 사망지 불상으로 사망한 김형관의 경우 검찰의 검시조서 사망 원인에는 두부 총상(전두부 좌측두정골 심한 손상(뇌실질 이탈))로 기록되어 있다. 5월 21일 총상 사망자의 경우 피격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기에 대부분 피격 장소나 사망 장소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김형관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사망 원인이 M16에 의한 사망이라고 간주하기에는 그 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뇌실질 이탈’과 같이 신체의 상당한 훼손을 동반한 사망자는 김형관 이외에도 다수가 존재한다. 5월 27일 도청 사망자 경우에도 박병규(5cm×12cm)와 박진홍(7cm×13cm)은 총상의 정도가 다른 희생자에 비해 훨씬 넓고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훼손은 M16 총상보다는 기관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월 27일 상무총정작전의 경우 도청에서 작전을 전개한 특전사 병력은 개인 화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관총에 의한 손상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과 헬기 조종사들의 주장처럼 헬기 사격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헬기 사격에 의한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다수 존재하지만 1980년 당시 검시를 신군부가 주관하면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

사망자의 사망 원인 통계가 발표 시점과 주체에 따라서 제각각이라는 사실은 검시 기록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신군부는 검찰의 검시 조서 이외에 별도의 검시 기록이나 사망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헬기 조종사들이 주장하는 사망자 존재 여부의 검증은 군이 확보하고 있었던 사망자 검시 기록에 대한 공개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검시 기

록에 대한 발굴과 검증은 헬기 사격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전두환 재판은 헬기 사격을 둘러싼 기억투쟁의 속성을 잘 드러냈다. 전두환 재판은 신군부에 의해 왜곡된 5·18의 기억을 들추어 내는 기억투쟁의 과정으로서 왜곡·은폐된 기억을 진실의 담론으로 재구성하는 사회적 실천의 과정이었다. 특히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군 기록을 시민들이 재전유하여 진실규명의 기제로 활용한 첫 사례가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의 핵심 쟁점인 헬기 사격은 전두환 신군부의 입장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 만약 실재했더라도 없었던 사건이 되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헬기 사격은 신군부의 진압 논리이자 공식기억인 ‘광주사태’의 자위권 사격을 부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위권 사격이라는 신군부의 발화는 공식기억이 갖는 수행성의 특징을 잘 보여줬다. 발화는 그것이 말하는 바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말해진 발화의 결과로서 일련의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기도 한다(주디스 버틀러, 2020).

공식기억이 갖는 발화의 특징은 헬기 사격을 둘러싼 기억투쟁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자위권 사격이라는 신군부의 발화는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군부의 공식기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헬기 사격은 폐기되거나 조작될 수밖에 없었다. 헬기 사격에 관한 군 기록이 실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신군부의 입장에서 헬기 사격은 5·18에 관한 공식기억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

에 기억의 정치로 소환하여 지속적인 논쟁을 이어갔다. 전두환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비중있게 다룬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

헬기 사격은 5·18민주화운동의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소수의 조종사에 의해 실행되었다. 헬기 조종사들은 헬기 조종이라는 전문성을 매개로 한 조종사들만의 폐쇄적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용이했다. 전두환 재판에서 조종사들은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의 헬기 사격 주장을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매도했다. 전두환과 헬기 조종사들은 헬기 사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부정했다. 이들의 부인전략은 ‘부정은 가해자들의 보편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허버트 허시, 2009).

전두환 재판은 역설적이게도 신군부가 은폐했던 군 기록을 발굴하여 전두환과 조종사들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시민들의 기억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받게 했다. 이번 연구는 헬기 사격에 관한 기억투쟁을 전두환 재판을 중심으로 2017년 이후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 발굴한 군 기록물 분석의 결과를 담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여전히 사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 진실에는 여전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발굴한 군 기록을 통해 헬기 사격 은폐의 과정과 5월 21일 헬기 사격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국가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대항기억이 사회의 공식기억으로 자리 잡은 사안이라고 평가한다(이소영, 2019), 그렇지만 전두환 재판은 대항기억이 사회의 공식기억으로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드러냈다. 5·18민주화운동의 기억투쟁이 완성된 것처럼 간주했지만, 전두환 재판은 5·18민주화운동의 기억투쟁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는 계속되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기억 또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전두환 재판 이후에도 헬기

사격에 대한 치열한 쟁투는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5·18관련 군 기록에 대한 실증과 기억투쟁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연구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굴한 군 기록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기억을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작업과 함께 여전히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헬기 사격의 총체적 진실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관한 연구와 조사는 후속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범(2003).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기억투쟁으로 서의 4.3문화운동 서설”,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2호: 67~104.
- 김희송(2017). “5·18민주화운동의 재구성: 계엄군의 사격행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2호: 5~58.
- _____(2020). “군 기록물 분석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연구: 국보위 ‘광주사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1호: 5~52.
- 나간재 외(2004).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이성우(2011).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OUGHTOPIA』 26(1), 63-86.
- 이소영(2019). “역사부정 규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 5·18왜곡처벌 법안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61호: 157~184.
- 임지현(2019). 『기억 전쟁-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전두환(2017). 『전두환 회고록』. 자작나무숲.
- 정근식(2013). “한국에서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347~394.
- Butler, Judith(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김응산·양효실(역). 경기: 창비: *Notes Toward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 Hirsch, Herbert(2009).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강성현(역). 서울: 책세상: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광주일보(2017). 5월 22일.
- 경향신문(2017). 8월 5일.
- 뉴시스(2017). 5월 19일.
- 중앙일보(2017). 5월 22일.

〈기록물 자료〉

- 계엄사(1988). 『국방부 자료』.
- _____(1989). 『광주사태 관련 증언대비계획 I』.
- _____(1989). 『광주사태 관련 청문회 결과 분석』.
- _____(1988). 『제1차 증언 기초자료(1)』.

- _____(1988). 『31사단 관계관 간담회』.
- 계엄사령부(1980). 『계엄상황일지』.
- 광주지방법원 판결(2020).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8).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 군사연구실(1980). 『첨부#3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 _____(1980). 『첨부#6 31사단 전투상보』.
- _____(1980). 『첨부#7 광주사태수습개요』.
- _____(1980). 『첨부#8 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 기무사령부(2017).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자료제출 추가 25권』.
- 보안사령부(1989). 『광주사태』. 『383-1989-8』.
- _____(1980). 『광주사태 관련자 처리방침 발표 여론』. 『383-1980-100』.
- _____(1980).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87』.
- _____(1980).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 _____(1980). 『광주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 『383-1980-100』.
- _____(1980).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 _____(1980).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 『383-1980-100』.
- _____(1980). 『부마지역 학생소요 사태 교훈』. 『383-1980-100』.
- _____(1988). 『사태성격규정』. 『383-1988-5』.
- _____(1988). 『사후대책』. 『383-1988-5』.
- _____(1989). 『예상질의 답변(광주사태 전모관련)』. 『383-1989-2』.
- _____(1988). 『쟁점별 대응논리』. 『383-1988-5』.
- _____(1988). 『총괄정리』. 『383-1988-5』.
- _____(1980). 『충정상황』. 『383-1980-87』.
- _____(1980). 『폭도들의 행패사례』. 『383-1980-100』.
- _____(1980). 『5.17충정병력 출동(1,5,9공수여단)』. 『383-1980-103』.
- 보안사 1처(1980).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 서울중앙지검(1996). 『12·12 및 5·18 사건 수사기록』.
- 육군 기갑학교(1981). 『기갑학교 부대사』.
- 육군 기록정보관리단(1980).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
- _____(1980). 『특전사 전투상보』.
- _____(1980). 『20사단 전투상보』.

_____ (1980). 『20사단 충정작전상보』.

_____ (1980). 『31사단 전투상보』.

육군 본부(1982). 『계엄사』.

육군 항공감실(1981). 『80항공병과사』.

Abstract

A study on the struggle of memory surrounding the
helicopter gunshot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ee-Song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the memory struggle surrounding helicopter gunshot and its meaning based on the observation of Jeon Doo-Hwan trial, and grasps the actual truth of helicopter gunshot. The helicopter gunshot was an incident that was directly opposed to the right of self defense gunshot, which is the basis of the Jeon Doo-hwan new military regarding the suppression of the “Gwangju Uprising”, and the intense struggle on the truth of gunshot has been going on until now. The Jeon Doo-Hwan trial was a space of memory struggle to reveal the substantial truth of helicopter gunshot that has been distorted and concealed by the new military. The official memory of new military in the cause of self defense gunshot resulted in denial and concealment of helicopter gunshot. That is why there are no military records on helicopter gunshot. The Jeon Doo-Hwan trial has revealed the process in which the counter-memory of helicopter gunshot has been reorganized into the official memory of society.

Key Words: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elicopter gunshot, struggle of
memory, politics of memory, Jeon Doo-Hwan trial

논문신청일: 2021.04.08.
논문심사일: 2021.04.17.
게재확정일: 2021.04.23.